



2021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순서

1 특고 고용보험 주요내용

- ◆ 적용
- ◆ 피보험자
- ◆ 보험료 산정 부과
- ◆ 구직급여 등

2 Q & A

3

1. 특고 고용보험 직종 개념

■ 보험적용 대상자



노무제공자 정의(고용법 제77조의 6)

- ✓ 근로자가 아니면서
-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
- ✓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12개직종)

고용보험적용 대상자



2021.7.1. 적용

①보험설계사¹⁾,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²⁾,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교사,
⑤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³⁾, ⑩화물차주⁴⁾,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의 12개 직종 중 방과후학교 강사를 제외하고 캐디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s/w프리랜서(7.1.추가) 총 15개 직종이 산재보
험 적용대상

2022.1.1. 적용

플랫폼기반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보험적용 대상자

건설기계조종사(시행령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건설의 경우 원수급인, 제조는 제조업체

-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계약 당사자(원청, 하청, 제조업체 등)임

◆ 건설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특고 고용보험 별도 성립신고

◆ 일반제조업 및 도소매업체 등에서 건설기계조종사를 사용하는 경우

: 산재와 고용보험 특고 별도 성립 신고

◆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시멘트제조업은 고용보험만 특고 별도 신고

■ 보험적용 대상자

화물차주(시행령제104조의11제1항제11호)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 산재보험과 대상자는 동일하나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이외의 화물정보망 등의 알선에 따른 일회적인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의 고용보험 유의사항

- ◆ 산재는 이중취득 불가, 고용은 이중취득 가능
- ◆ 산재는 7월 보험료 납부기한 8.10, 고용은 7,8월 보험료 납부기한 9.10까지
- ◆ 단기노무제공자는 건설기계조종사만 대상이 되며 1개월 이상 계약자는 취득신고를 익월 15일까지, 1개월 미만 계약자는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서를 익월 15일 까지 매월 제출(사유발생시)
-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업의 산재는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자진신고)
-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업의 고용은 계약당사자가 보험가입자(하청, 원청, 건설기계관리사업자, 제조업자 등)로 별도 성립 후 월별 부과고지 대상
- ◆ 고용보험 기준보수적용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자동차 2개 직종
- ◆ 건설기계조종사 기준보수: (월) 2,479,444원, (일) 82,648원
- ◆ 화물차주 기준보수: (월) 4,310,000원, (일) 143,666원



■ 적용제외



● 연령제한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근로자와 동일 기준)

- ✓ 시행일 '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으로 65세로 적용여부 판단**
-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21.7.1.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이라도 적용

● 사례예시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와 2021.8.1. 5개월 계약한 경우
2021.8.1. 취득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제외
- 2021.1.1. 65세 이상인 건설기계조종사와 1년 계약을 한 경우
- 2021.7.1. 기준 65세 이상인 특고로서 적용제외



■ 건설기계조종사 적용



● 건설기계 적용 기준

- **고시 기준보수 적용 대상(월 2,479,444원, 일 82,648원)**
- 고시한 기준보수로 월별 보험료 부과
- 보험료부과 월보수: 월 2,479,444원, 일 82,648원 (2021.6.29. 고시금액)
- 월 중 취득시 적용 기준보수로 일할 계산
- 1개월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 1개월 미만 계약을 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제출

● 보험료 부과 예시

2021.7.20.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회사가 1년 계약을 체결하여 7.20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득일자 7.20. (7월 보험료: 2,479,444원 X 12/31X1.4%)
 단 7.20.~7.31.까지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제공확인신고서를 2021.8.15.까지 신고 1일 보수 82,648원 적용



■ 화물차주 적용



● 화물차주 적용 기준

- **고시 기준보수 적용 대상(월 4,310,000원, 일 143,666원)**
- 고시한 기준보수로 월별 보험료 부과
- 보험료부과 월보수: 월 4,310,000원, 일 143,666원 (2021.6.29. 고시금액)
- 월 중 취득시 적용 기준보수로 일할 계산
- 1개월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 보험료 부과 예시

2021.7.20. 화물차주와 철강회사가 1년 계약을 체결하여 7.20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득일자 7.20. (7월 보험료: 4,310,000원 X 12/31X1.4%)
8월 보험료는 4,310,000X1.4%=60,340원(특고:30,170원, 사업주:30,170원)



2이상의 노무를 제공할 경우 부과 기준

● 부과 기준(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2이상의 노무를 제공할 경우 부과 기준(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두 개 이상의 사업장과 계약체결 시 기준보수를 사업장수로 균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및 부과(법정기한 내 신고)

* 화물차주 기준보수 431만원, A와 B 사업장 노무제공 계약 → 기준보수를 사업장 별 균분(2,155,000원씩)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납부

사례) 화물차주에 대해 B사업장이 8.15. 취득신고(취득일자 7.1.)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시

- A 사업장 취득 확인

- 보험료 8.15. 구축

- 기준보수 431만원을 1/2하여 A, B 각 사업장에 각각 보험료 부과

☞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제출시 나중에 신고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일부터 기준보수 균분 적용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일이 아님에 유의 (두개의 사업장이 법정 신고 기한내에 모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일자부터 일할 균분적용)

{예: 2개 이중 취득, B사 7.5.취득,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법적신고 기간내 신고 할 경우

(B사 7월 보험료:4,310,000원 \times 1/2 \times 27/31 \times 1.4%): 공단이 취득내용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정산하여 사업장으로

통보:사업장은 법정 기한내에 취득신고만 하면 됨}



■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관계 신고 유의사항



특고 사업장 고용보험 별도 신고

- 건설특고에 대하여 건설회사(본사, 일괄유기)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건설기계관리사업, 계속사업)를 신고해야함(특고전담센터담당)
- 특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고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사업장관리번호를 이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필요



특고와 계약한 경우 계약일(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특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기존 자진신고 사업장은 기존 지사 담당자가 계속 처리함.



화물차보험관계의 신고 유의사항



특고 사업장 고용보험 별도 신고

- 화물차주를 사용하는사업장은 기존 관리번호와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사업장 관리번호를 신고해야함(특고전담센터담당)
- 특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고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사업장관리번호를 이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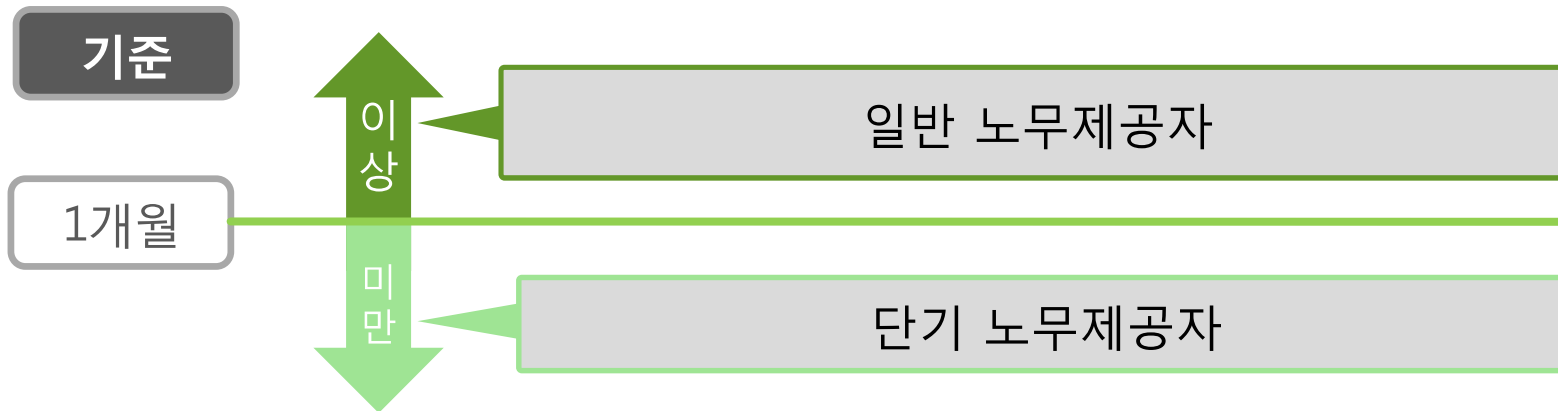


특고와 계약한 경우 계약일(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특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Ⅲ.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의 구분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노무제공을 받은 자(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전월 노무제공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피보험자격 취득

피보험자격취득일

- (노무제공 시작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의 '**시작일**'
- '21.7.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는 경우 '21.7.1.취득
- 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노무를 제공하는 일자가 취득일자 예) 7.15.노무를 제공하게 되면 7.15.에 대한 취득 신고를 8월 15일까지
(소득기준 충족월의 초일)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해당월의 초일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유의점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단, 특고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 (신고서식)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특고관리번호) 신고 시 **“특고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
 - 일반근로자 관리번호와 별도로 분리하여 특고 관리번호 부여

사업주가 신고 미이행

- (신청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특고가 신고 가능
-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노무제공자)
- (제출서류)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격상실

피보험자격상실일 1 - 이직

- (월 중간일 이직) 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 이직일(종료일)의 다음날
(사례) '21. 8. 15. 계약 해지일 → 상실일 : 8월16일 ,이직시 상실사유
 - (상실보험료 부과기준)
(사례) 건설기계 8월 보험료 부과기준: 2,479,444원X15일X1.4%
(사례) 화물차주 8월 보험료 부과기준: 4,310,000원X15일X1.4%
 - (상실월의 초일) 상실월 소득기준 미만 → (상실사유 : 코드 43)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취득 및 상실

단기노무제공자(단기특고)

- (취득일 및 상실일) 노무제공계약을 '일단위' 또는 '건별' 로 계약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일자를 취득 및 상실일로 봄(단기노무제공자는 일기준 기준보수로 적용 받음)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신고유의사항) 신고 시 "**특고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



■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 근로자 - 특고, 특고-특고, 특고-예술인 → 모두 취득
- 근로자 - 근로자는 이중취득 불가

(예시) 특고 vs 예술인 vs '갑' 사업 근로자(월평균보수 300만원) vs '을' 사업 근로자(월평균보수 200만원) → 특고, 예술인, '갑' 사업 취득

- 특고 - 자영업자 → 특고만 취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자영업자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계속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영업자와 특고 이중취득이 가능함)
- 같은 사업장내 임금근로자와 특고 이중 취득은 불가(근로자로적용)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IV. 보험료 산정 부과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

적용대상 사업

실업급여사업만 적용

- ✓ 고용보험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음

보험료율 1.4%

특고의 보수액 x 보험료율(1.4%)

- ✓ 근로자와 달리 적용(1.4%)되며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 균등부담
- ✓ 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직종별 기준보수

직종별기준보수 × 보험료율

- 직종별기준보수

- 화물차주 : 월 4,310,000원 , 건설기계조종사 : 월 2,479,444원

■ 보험료의 정산



● 피보험자격 상실, 보험관계 소멸 보험료 정산

- (원칙) 기준보수로 별도의 정산 필요 없음
 - 해당 기준보수의 일할 계산(취득일과 상실일)
 - 예) 취득일:8.1. (1개월 보험료 부과), 7.15.(17일 보험료 부과)

● 보수총액신고 비대상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휴업 등 신고

- (휴업등 신고서) 노무제공자가 휴직,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휴업 등 신고서' 제출
 - 휴업 신고기간에는 월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휴업신고 전후에 기준보수 일할 계산 적용

☁ 예) 8/10~9/30까지 휴직신고시 8월 보험료는 8/1~8/9일까지의 9일,

-9월 보험료 부과 비대상, 10월 보험료부터 부과



IV.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상실):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특고로 피보험 자격 유지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수준

●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하한액은 133만원X0.6=798,000원, 1일 26,6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예) 특고(A) '22.3.11.취득, '22.12.20. 이직,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 단기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 단기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다수 직종에 종사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 2이상에 피보험 취득이 된 경우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하였을 경우 → $0.25(1 - 9 \div 12) \leq 0.5(90 \div 180)$ 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하였을 경우 → $0.67(1 - 4 \div 12) \leq 0.67(120 \div 180) + 0.44(4 \div 9)$ 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재직중이어야하기에 휴업등신고서제출 안내)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60만원)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Q & A

■ 연령기준 관련

● 적용제외 65세

Q. 21.7.1.이전부터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노무를 제공한 특고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태면 취득 대상이 되는지?

A. 계약 체결이 이전이라도 법 시행일인 7.1. 당시 만 65세 이상이면 불가.
'21.7.1. 이전 65세 미만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 취득 된 노무제공자는 법 시행 후 65세가 되어도 당연 취득 대상임

■ 보험가입자 관련

●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가입자

Q.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가입자는

- (원칙)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한 사람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건설기계임대계약 당사자별 보험가입자
 - (원청공사사업자와 계약 체결) 원청공사사업자
 - (하청공사사업자와 계약 체결) 하청공사사업자
 - (고용보험 당연·임의적용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개인직영공사 사업주
 - (레미콘제조업체) 레미콘제조업체 사업주
 - (일반 제조업체) 제조업체 사업주가 고용과 산재보험 별도 가입

■ 소득 기준 관련

● 소득감소에 의한 상실

Q. 해촉이 아니고 소득감소에 의해 상실하는 경우 신고 구분이 있는지?

A. 소득감소에 의한 상실 코드는 '43'으로 신설

B. 계약종료 등의 상실코드와 다름

■ 적용기준

● 적용대상

Q.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용기준은?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위·수탁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전보조원 등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적용기준

● 적용대상

Q. 화물차주의 적용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외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한 일회적
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 월보수액 신고 관련

● 보험료 부과 절차

Q. 7.1. 시행 이후 보험료 부과 절차는 ?

- A. 최초 취득 신고 8.15.까지 신고,
- B. 공단 보험료 7월과 8월 보험료 9.10.납부기한,
- C. 9월 보험료는 10.10.납부기한

■ 기준보수 관련

● 보험료부과

Q 월중간에 취득 및 상실시 보험료 부과기준은?

- A. 7.15.취득시 건설기계조종사일 경우 $(2,479,444 \times 17/31) \times 1.4\%$
- B. 8.10. 계약이 종료될 경우 화물자동차 $(4,310,000 \times 10/31) \times 1.4\%$

■ 업무처리 관할

기관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 •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등 담당 •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신설

센터명	관할지역
서울특고센터(02-6946-0500)	서울·강원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부산특고센터(051-790-0300)	부산·대구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경인특고센터(032-712-0500)	경인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대전특고센터(042-718-0600)	대전·광주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국세청)

국세청 세정홍보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안내

20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명칭 변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국세청)

제출시기

종전

'21년 6월 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4,7,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7월 말일까지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감사합니다

